



제목: 청구 및 추심	일자: 2016/04/01
	해당 일자의 버전 대체:
범주: SYS.FIN	승인: BSHSI 이사회

정책

Bon Secours 보건의료제도 법인("BSHSI") 급성 치료 병원 시설을 위한 청구 및 추심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BSHSI의 정책입니다. 환자 재정 보조 정책과 연계된 이 정책은 재정 보조 및 응급 의료 정책, 재정 보조에 적격인 사람들에 대한 부과 제한, 또한 합당한 청구 및 추심 노력 등에 관하여 수정된 바와 같이 1986년 미국연방조세법 501(r)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도로 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 정책은 모든 BSHSI 급성 환자 치료 및 독립적 응급실 시설에 적용됩니다. BSHSI를 대신해 추심 업무를 하는 추심 대행사는 아래 설명한 대로 BSHSI의 추심 관행을 존중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응급실 내과 의사, 마취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및 병리학자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이 절차에 대한 근거는 BSHSI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으로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지속적으로 보증인 및 적용 가능한 제삼자 납부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BSHSI 및 계약을 맺은 추심 대행사는 제공된 서비스가 미 공정채권추심법(FDCPA)을 포함하여 해당 서비스를 관장하는 적용 가능한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보장하게 됩니다. BSHSI와 맺은 계약에 있어, 각 추심 대행사는 본 세커스 보건의료제도의 가치 및 그 임무에 부합하는 모든 환자, 직원 및 사업 제휴업체 등을 상대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각 추심 대행사는 해당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있어 최선의 업계 관행을 활용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정의

일반청구금액(AGB) – 일반청구금액은 응급 및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정 보조에 적격한 환자에 대한 부과 금액은 단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일반청구금액("AGB") 정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과 금액은 응급 및 기타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해 미국 메디케어 및 기업 납부자로부터 걷어들인 허용 평균 금액에 기초합니다. 허용 금액에는 보험사가 납부하게 되는 금액 및 개인이 직접 납부 책임이 있는 금액(있는 경우) 모두가 포함됩니다. AGB는 26 CFR §1.501(r)별 룡백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되며, 이는 주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AGB 할인 금액에 관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부록 A를 참조합니다.

약성 부채 – 추심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보증인이 소유한 계좌 잔액.

추심 대행사 – "추심 대행사"는 보증인에게서 납부 비용을 재촉하거나 추심할 수 있도록 병원에 고용된 실체입니다.

자격 기간 – 보증인이 재정 보조를 받는 기간.

추가추심조치(ECA) – IRS 규정에 따른 ECA는 다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 개인의 부채를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
- 신용 보고 대행사 또는 신용 조사기관에 대한 피해 보고
- 이전에 제공된 치료에 대한 미납부로 인해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납부 연기, 거부 또는 요구
-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은 법적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조치들:
 - 재산 유치권 부여
 - 부동산에 담보권 행사
 -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개인 재산 압류 또는 동결
 -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 개인 체포 유발
 -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게 함
 - 개인 임금 압류 통보

파산 수속을 요구하는 것은 추가추심조치입니다.

보증인 – 의료비 청구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환자, 간병인, 또는 실체.

환자 재정 보조 프로그램 – 지불할 보증인 잔액을 줄여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보험 미가입 또한 보험 일부 가입 보증인에게 제공되며 재정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환자의 경우 환자 책임 – "환자 책임"이란 환자의 제삼자 배상책임이 환자의 보험금을 결정한 후에 보험 가입 환자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 미가입 환자의 경우 환자 책임 – 지역 AGB가 적용된 후에 환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허용 ECA – ECA 로 범주화되는 광범위한 일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ECA BSHSI 가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한 경우 신용 보고 대행사 또는 신용 조사기관에 대한 피해 보고입니다.

제삼자 납부자 – 환자(퍼스트 파티) 또는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정에 연관된 의료인(세컨드 파티) 외의 조직

보험 일부 가입자 –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 계획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총 비용을 청구 받은 개인. 예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자가 투여 약물, 최대 보험금, 임산부 부칙 등

보험 미가입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

절차

내역 명세서

보증인은 무료로 언제든지 자신의 계좌에 대한 내역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보증인은 청구에 대한 내역 또는 부과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고객 서비스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청구에 관해 문서로 줄 것을 요청한다면, 직원은 3 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요청 받은 문서를 제공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청구 주기

BSHSI의 청구 주기는 첫 명세서 발행일로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120일 후에 종료됩니다. 청구 주기 동안 보증인은 전화, 명세서 및 서신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청구 주기 내내 보증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명세서 및 서신에 대한 일정입니다:

- 잔액을 보증인이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명세서를 보증인에게 발송합니다
- 명세서를 발송한지 30일 이후에 보증인에게 해당 계좌의 납기일 경과를 알리는 후속 서신을 발송합니다
- 첫 번째 서신을 발송한지 30일 이후에 보증인에게 해당 계좌의 체납을 알리는 두 번째 서신을 발송합니다
- 두 번째 서신을 발송한지 30일 이후에 보증인에게 해당 계좌의 체납이 심각하며 계좌이 추심 대행사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알리는 세 번째 및 최종 서신을 발송합니다
- 청구 주기의 120일째에 보증인의 계좌은 일차 추심 대행사에게 배치됩니다. 일차 추심 대행사는 시작하고자 하는 특정 ECA의 30일 이전에 청구 내역서를 통해 환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내역서에는 또한 해당 ECA가 시작되며 재정 보조 정책의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요약본이 포함된 후에 마감일이 포함됩니다.

청구 주기에 사용된 각 내역서 및 지급서에는 납부 방법, 납부 옵션, 재정 보조 홈페이지 및 고객 서비스 전화 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지침

절차 지침에 대해서는 부록 B를 참조합니다.

부록 A

AGB

AGB 할인에 관한 추가 정보를 www.fa.bonsecours.com에서 볼 수 있거나 또는 (지역 번호) 804-342-1500 나 (무료) 1-877-342-1500 의 번호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래퍼해녹 종합병원의 고객 서비스 센터는 804-435-8529 로 전화 주십시오.

<http://www.fap.bonsecours.com>

부록 B

절차 지침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직원을 돕도록 이 지침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절차 지침을 따르는 동안, 직원이 관행 및/또는 업무 책임 범위 내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보증인 청구

1. 배상 정보 획득: BSHSI는 민간 또는 공공 건강보험이 환자에게 병원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제삼자 납부자 청구: 병원은 계약 및 비계약 납부자, 보상 납부자, 보상 책임 및 자동차 보험사, 또한 환자 치료에 재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 납부자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제삼자 납부자에게서 모든 지불금액을 열심히 재추해야 합니다. BSHSI는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정보에 기초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제삼자 납부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인 청구

보증인에게 계좌 잔액을 알릴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내역서 및 지급서를 활용합니다.

각 내역서 및 지급서에는 납부 방법, 재정 보조 및 문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 보험 가입 환자 청구: 병원은 보험 혜택 설명서(EOB)에서 산정되었거나 제삼자 납부자가 지시한 금액을 보증인에게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2. 보험 미가입 환자 청구: 병원은 보증인에게 지불할 금액을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지불할 금액을 병원에서 계산한 일반청구금액(AGB)을 활용하여 결정합니다. BSHSI의 아래 계산 내역은 지리적 부분별 총 비용 할인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GB:

- 본 세커스 리치먼드: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에 대한 청구 비용의 75% 할인.
- 본 세커스 햄프턴: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에 대한 청구 비용의 75% 할인
- 본 세커스 래퍼해녹: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에 대한 청구 비용의 65% 할인
- 본 세커스 센터기: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에 대한 청구 비용의 75% 할인
- 본 세커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에 대한 청구 비용의 80% 할인

추심 관행

1. 일반 추심 관행: 이 정책에 대한 사안으로서, BSHSI는 보증인으로부터 납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추심 노력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추심 활동에는 보증인에게 내역서/지급서 발행, 전화 통화, 또한 사전 추심, 얼리 아웃 및 악성 부채 벤더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확장된

사업 제휴업체에 대한 계좌 소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SHSI은 제삼자에게 환자 부채의 소유권을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추가추심조치: BSHSI 및 그 추심 대행 제휴업체는 신용 조사기관 보고서 형태로 ECA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불할 금액이 미납부된 것에 대해 신용 조사기관에게 보증인이 보고하는 것은 청구 주기가 종료된 후 60일까지는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증인은 추심 대행 제휴업체에서 신용 조사기관에 보고한 내용을 30일 앞서 통지받게 되고, 미납부의 경우에 취해야할 ECA에 대해 통지받게 되며, 환자 재정 보조 정책의 평이한 언어로 작성한 요약본 사본을 제공받게 됩니다. BSHSI나 그 추심 대행 제휴업체는 재정 보조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는 보증인을 상대로 ECA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재정 보조 적용 프로세스 동안 ECA 없음: BSHSI 및 그 추심 대행 제휴업체는 재정 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보증인에게 ECA를 재촉해서는 안됩니다. 보증인은 재정 보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게 되어 납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BSHSI는 보증인의 자격 기간 동안 보증인에게서 \$5.00 이상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부분적 재정 보조에 대해서 승인되었다면, BSHSI는 보증인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하게 됩니다. BSHSI는 \$5.00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부분적 재정 보조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ECA는 부분적 재정 보조가 승인되었던 일자로부터 30일간 재개되지 않습니다.
4. 납부안:
 - a. 적격 환자: BSHSI 및 BSHSI를 대신해 활동하는 추심 대행 제휴업체는 보증인에게 납부안 계약을 체결할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안 계약은 보증인이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지불할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 b. 납부안 조항:
 - 모든 납부안은 무이자여야 합니다
 - 모든 월별 납부는 BSHSI와 보증인 사이의 금액에 상호 합의한 내용에 기초하게 됩니다
 - 계좌 상의 잔액을 합의된 기간 내에 완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는 매월 15일까지 합니다
 - 뉴욕의 경우: 월별 납부 금액은 환자의 총 월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c. 납부안 체납 선언: 보증인이 연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된 후에 납부안에서 체납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발생한다면, 보증인은 체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보증인의 가장 최근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하게 됩니다. 납부안에서 체납 선언을 한 후에, BSHSI나 그 추심 대행사는 이 정책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추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추심 대행사: BSHSI는 보증인 계좌를 다음 조건의 대상으로서 추심 대행사에 참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추심 대행사는 BSHSI와 체결한 서면 계약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나. 추심 대행사와 체결한 BSHSI의 서면 계약서는 추심 대행사의 해당 기능 활동이 BSHSI의 임무, 비전, 핵심 가치, 재정 보조 정책의 조항 및 청구 및 추심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 추심 대행사는 ECA를 시작하기 30일 이전에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재정 보조 정책의 보통 페이지 요약본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BSHSI는 부채 소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즉, 부채가 추심 대행사에 “판매”되지 않습니다)

마. 추심 대행사는 재정 보조에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보증인을 식별하기 위한 준비된 프로세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추심 대행사는 재정 보조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보증인에게 전하고 다시 재정 보조를 구하는 보증인이 (지역 번호) 804-342-1500 나 (무료) 1-877-342-1500 의 번호로 BSHSI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 전화하거나 <http://www.fa.bonsecours.org/> 를 참조하게 해야 합니다. 래퍼해독 종합병원의 경우, 보증인에게 804-435-8529로 전화하도록 지시해 주어야 합니다. 추심 대행사는 재정 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보증인에게서 납부 금액을 받으려 해서 안됩니다.

바. 계좌에 대해 보증인에게 BSHSI에서 최초 청구를 발송한 때로부터 최소 12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사. 보증인은 납부안을 또는 납부안에 대해 협상하지 않습니다.